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97
----------	------

제출연월일: 2025. 3. 6.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출산양육지원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및 다자녀가정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지원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2025년 건축과 당초예산 반영
 - 전체 135,800천원(시 97,000천원, 구 38,800천원)
-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가족복지과-7031호, 2025. 2. 18.)
- 라. 입법예고: 2025. 2. 6. ~ 2. 26.(20일간)
 - 의견 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박○○	◦ 제8조의2(그 밖의 지원) 제1호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¹ 과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과 관련하여 “층간소음예방 물품 지원” 문구를 추가하여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반 영 > ◦ 제8조의2(그 밖의 지원) 구청장은 출산양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¹과 층간소음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비용추계서 및 자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5. “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조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그 밖의 지원) 구청장은 출산양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층간소음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u></p> <p>5. <u>“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u></p>

제4조(지원기준)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립해야 -----.

제5조(지원신청) ① -----

----- 안내해야 -----.

② -----

----- 첨부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환

제6조(지원절차) ① -----

----- 확인
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송부해야 -----.

③ -----

----- 지급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조치) ① -----

----- 환수해야 -----.

② -----

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재해야 -----.

제8조(대장 등 비치) -----

관리해야 -----.

제8조의2(그 밖의 지원) 구청장은 출산양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과 층간소음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다자녀가정 소음방지매트 시공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가구: 5인 이상 가구이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산정
 - 16,761세대(울산 5인 이상 가구수)×66.29%(공동주택 거주비율) ×9.71%(3자녀 이상)×18%(중구 공동주택 비율)
-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70만원 지원(자부담 3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지출	소음방지매트시공비		135.8	135.8	135.8	135.8	135.8	679
	소계(a)		135.8	135.8	135.8	135.8	135.8	679
수입	소음방지매트시공비		97	97	97	97	97	485
	소계(b)		97	97	97	97	97	485
총비용(a-b)			38.8	38.8	38.8	38.8	38.8	194

※신청인 자부담이 있으므로 2025년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른 계속사업 검토 예정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보조금		-	-	-	-	-	-
	특별보조금		-	-	-	-	-	-
시비			97	97	97	97	97	485
기금			-	-	-	-	-	-
구비			38.8	38.8	38.8	38.8	38.8	194
민간자본			-	-	-	-	-	-
합계			135.8	135.8	135.8	135.8	135.8	679

1. 부대의견: 시비 보조금 교부 및 비수익성 사업으로 국비지원, 자체수입 없음
2. 협의사항: 예산계 협의(건축과 예산 편성)
3. 작성자: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고미정(052-290-490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비	일반회계	97	97	97	97	97	485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구비		38.8	38.8	38.8	38.8	38.8	194
공공단체		-	-	-	-	-	-
민간자금		-	-	-	-	-	-
합계		135.8	135.8	135.8	135.8	135.8	679

※ 자원배분 : 시비 50%, 구·군비 20%(자부담 30% 별도)

2. 자원조달방안: 시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 확보
3.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예산계 협의(건축과 예산 편성)
5. 작성자: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고미정(052-290-4905)